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범위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하던 것을 해당 기산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어시험 성적 인정범위 확대(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범위를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 등으로 확대

나. 감정평가사시험 합격자 공고방식 변경(안 제12조제1항)

- 감정평가사시험 합격자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던 것을 국민의 미디어 이용방식에 맞춰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공고방식 완화

다. 기타 용어 정비 및 미비점 개선(안 제30조제1항 및 별표2)

-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사로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수험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8.5월 이전에 실시되던 구(舊) 텀스의 성적기준을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없 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을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으로, “취득한”을 “취득한(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1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과 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를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과 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등”을 “감정평가사”로 한다.

별표 2 중 텡스(TEPS)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 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204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하는 성적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로 공고하여 공고된 방법대로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험과목 및 방법)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 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 산(逆算)하여 <u>2년이 되는 날 이 후에 실시된</u>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 <u>영어시험</u> ”이라 한 다)에서 <u>취득한</u> 성적으로 시험 을 대체한다.	제9조(시험과목 및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5년이 되는 해의 1 월 1일 이후에 실시된</u> ----- ----- ----- <u>취득한(제1차 시험일 전 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11 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 정한다)</u> ---.
⑤ (생 략) ⑥ <u>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국토교 통부장관이 별표 2에서 정한 영 어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기준점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⑤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u>시험합격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합격자 결</u>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 --- ----- <u>시험합격자가 결 정된 경우에는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과 실무수습신청기간</u>

정에 관한 사항과 실무수습신청
기간 및 실무수습기간 등 실무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최종
합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② (생략)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
립인가)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
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무
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
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창
립총회를 소집하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등
의 소속 감정평가사 300명 이상
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들의 과반수의 동
의를 받아 회칙을 작성한 후 인
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및 실무수습기간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
립인가) ① -----

감정평가사-----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연 락 처	(044) 201 - 3452